

## ●재정경제부고시 제2026-76호

2025년 9월 29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04월 22일

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

###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

- 다 음 -

#### 1. 부과 내용

가. 부과 대상 공급국 : 중국

나. 부과 대상 물품 : 아크릴산 부틸(Butyl Acrylate)

○ 관세품목분류(HSK) : 2916.12.3000

다.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

공급국	공급자(수출자, 생산자)	잠정 덤핑방지 관세율(%)
중국	1. 타이싱 순커(Taixing Sunke Chemicals Co., Ltd.) 및 그 관계사	11.88
	2. 상해화이(Shanghai Huayi New Material Co., Ltd.) 및 그 관계사	9.53
	3. 핑후 페트로(Pinghu Petro Chemical Co., Ltd.) 및 그 관계사	19.17
	4. 그 밖의 공급자	19.17

라. 부과기간 : 2026. 4. 22. ~ 2026. 8. 21. (4개월)

마. 기타 행정사항

○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

#### 2. 부과이유

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6년 3월 3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.

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<별첨 자료 게재 안내>

아래의 별첨 자료는 [재정경제부 홈페이지([www.mofe.go.kr](http://www.mofe.go.kr))/법령/훈령·고시/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]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.

1.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의 덩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
2.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의 덩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의결서

**3. 부칙**

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